

●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-149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3월 10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 개정(법률 제21197호, '26.6.3. 시행)됨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, 제공절차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요청시 공문작성 및 전자우편, 팩스, 보안매체 등의 방식으로 요청토록 규정 신설(안 제38조의5제1항)
- 나.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전자우편, 팩스, 보안매체 등 협의된 방식으로 제공토록 규정 신설(안 제38조의5제2항)
- 다. 제공받은 대상자에게 통지할 정보의 내용으로 전화번호를 요청한 주체, 목적, 날짜로 구체화 규정 신설(안 제38조의5제3항)
- 라.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토록 규정 신설(안 제38조의5제4항)
- 마. 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('25.1.21)으로 공제사유인 “폐업 등”을 “폐업 또는 재난 등”으로 확대한 바, 이를 대통령령에 반영(안 제37조제1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
- 전자우편 : dear119@korea.kr

- 팩스 : (044)204-7848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(전화 (044)204-7859, 팩스 (044)204-78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